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구분	동사무소명칭	동사무소소재지	구분	동사무소명칭	동사무소소재지
영등포구	영등포제3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49번지 1호	영등포구	영등포 제3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번지, 59번지 1, 2호
	도림제1동	영등포구 도림동 81번지 2호		도림 제1동	영등포구 도림동 75번지

[별첨3]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 신청인

재산의 표시			매각대상 면적(m ²)	매수신청인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m ²)		주소	성명	
도림동144-203	대지	7	25 (7.5평)	도림동136-21	김갑수	
도림동144-205	대지	18				

2. 재산 현황

현용도	관리상태	감정액		연고자 유무
		감정기관명	감정가격	
나대지(6미터와 8미터 도로변(코너)에 공지 상태	인근대지(도림동144-185)에 공지상태로 관리중임	한국감정원	35,500,000 원	유

3. 처분 사유.

공유재산(잡종지)은 소규모 면적(7.5평)이므로 공공재산 활용이 불가능하며, 공유지 인접 지주로부터 공유지 매수 신청이 있어 구세의 수입증대 및 공유지 관리의 효율화.

4. 처분방법

공유지 면적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면적에 미달되며 또한 공유지 위치가 인근지주(김갑수)의 대지에 인접하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7, 24호에 의거 매각코자 함.

5. 처분재원의 용도.

공유지 매각대금은 구세의 잠수입 처리함.